

### <복지관 회원 이용수칙>

순번	내용	*비고
1	복지관 이용은 회원으로 등록된 이용자로 제한하며 프로그램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체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복지관의 방침에 따른다.	-
2	복지관 입실 시 *회원증은 항상 패용하며,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	출결시스템의 사용으로 인해 회원증 필참
3	복지관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하여 *담당자의 지도에 적극 협조하고 수용하는 자세로 임한다.	담당직원, 강사
4	강사 및 타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성과 관련된 *말과 행동은 일절 금한다.	신체적 접촉, 성희롱 발언 등
5	모든 프로그램 이용 후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두어 다음에 이용하는 회원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한다.	-
6	기물파손, 시설훼손, 분실 등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 및 배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.	고의의 사고인 경우가 확인되면 퇴관조치 및 회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.
7	*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.	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참조
8	*흡연, 음주, 도박, 싸움, 이성문제, 소란행위, 유언비어 유포, 비방, 음해, 공갈협박, 사행성 행위, 물품 매매행위, 종교적 행위는 일절 금한다.	상황발생 시 퇴관조치 및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.
9	관 내 상시녹화 중인 CCTV는 *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확인이 불가하다.	개인물품 분실, 싸움, 소란행위 등 개인이 직접 CCTV 확인 불가
10	위 수칙에 위배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용제한 및 사안에 따라 경찰의 협조로 제지할 수 있으며, 필요시 CCTV 영상을 경찰에게 제공할 수 있다.	-